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사업 연구성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의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을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으로 각각 이체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별정직 정원 2명(7급상당 이하)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에 두는 기후변화생태과를 기후변화평가과로 개편하고, 농자재 안전성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에 두는 화학물질안전과 및 농자재평가과를 각각 잔류화학평가과 및 독성위해평가과로 개편하며,

실용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7명(5급 1명, 6급 1명, 농업연구관 5명)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쌀의 적정한 생산 및 소비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에 두는 식량산업기술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민간인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농업과학관의 전시(展示)기획·운영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6급 1명, 농업연구사 1명)의 존속 기한을 2020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인력 관리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시간선택 제채용공무원 정원 9명(9급 4명, 농업연구사 4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전 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며,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정원 2명(8급 1명, 농업연구사 정원 1명)의 직렬을 각각 복수직렬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후변화생태과”를 “기후변화평가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변화생태과장”을 각각 “기후변화평가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기상 정보 분석 및 활용체계 구축

3.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에 관한 연구

제12조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업생태계 건전성 유지·보전 및 유용 생태자원이용 연구

제14조제2항 중 “화학물질안전과”를 “잔류화학평가과”로, “농자재평가과”를 “독성위해평가과”로, “화학물질안전과장”을 “잔류화학평가과장”으로, “농자재평가과장”을 “독성위해평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안전과장”을 “잔류화학평가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약의 잔류 시험기준과 방법 설정 및 등록평가 기법 개발

8. 등록신청 농약의 작물 및 환경 잔류성, 이화학적 평가
9.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10. 농약원제·제품의 분석법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11. 비료의 품질·안전성 평가와 평가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자재평가과장”을 “독성위해평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험기준”을 “약효·약해·독성시험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및 잔류성 평가”를 “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약”을 “농약·유해물질”로, “평가”를 “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약의 이화학적성,”을 “농약의”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부터 제2항 단서까지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각각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2 제2호, 별표 3 제2호, 별표 4 제2호, 별표 5 제2호, 별표 6 제2호, 별표 7 제2호, 별표 8 제2호 및 별표 9 제2호와 같다”를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

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에 따른 정원배정 시 소수
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

별표 2 중 총계 “339”를 “338”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39”를 삭제하며, “별정직 계 2”을 삭제하고, “비서(7급상당) 1”을 삭제하며, “비서(9급상당)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336”를 “337”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8 다음에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운전주사보·농업연구사·농촌지도사 또는 별정직 7급상당(비서)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8 다음에 “행정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상당(비서) 1”을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가군(시청각 담당) 1”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342”를 “341”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42”를 삭제하며, “별정직 계 2”을 삭제하고, “비서(7급상당) 1”을 삭제하며, “비서(9급상당)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339”를 “340”으로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 다음에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운전주사보·농업연구사·농촌지도사 또는 별정직 7급상당(비서)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8 다음에 “행정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상당(비서) 1”을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가군(시청각 담당) 1”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17”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517”을 “519”로 하며, 행정서기 “23”을 “22”로 하고, 그 다

음에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을 신설하며,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9”를 “10”으로 하고, 농업연구사 “245”를 “247”로 하며, “수의연구사 1”를 삭제하고, 기계운영서기보 3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시청각 담당) 1”을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시청각 담당) 1”를 삭제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2.0”를 삭제하고, “농업연구사 2.0”를 삭제한다.

별표 5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19”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519”를 “521”로 하며, 행정서기 “21”을 “20”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을 신설하며,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9”를 “10”으로 하고, 농업연구사 “240”을 “242”로 하며, “수의연구사 1”를 삭제하고, 기계운영서기보 3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시청각 담당) 1”을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시청각 담당) 1”를 삭제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2.0”를 삭제하고, “농업연구사 2.0”를 삭제한다.

별표 6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44”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344”를 “345”로 하며, 농업연구사 “159”를 “160”으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를 삭제하고, “농업연구사 1.0”를 삭제한다.

별표 7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45”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345”를 “346”으로 하며, 농업연구사 “158”을 “159”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를 삭제

하고, “농업연구사 1.0”를 삭제한다.

별표 7의2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4”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24”를 “26”으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 다음에 “식품위생서기보 1”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육 담당) “5”를 “6”으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2.0”를 삭제하며, “식품위생서기보1.0”을 삭제하고,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육 담당) 1.0”를 삭제한다.

별표 7의3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4”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24”를 “26”으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 다음에 “식품위생서기보 1”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육 담당) “5”를 “6”으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2.0”를 삭제하며, “식품위생서기보1.0”을 삭제하고,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육 담당) 1.0”를 삭제한다.

별표 8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29”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329”를 “33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5”를 “326”으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를 삭제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0”를 삭제한다.

별표 9 중 총계 “325”를 “326”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22”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322”를 “326”으로 하고, 3

급 또는 4급 이하 “319”를 “322”로 하며, 그 다음에 “전문경력관 1”을 신설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3.0”를 삭제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0”를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0년 10월 31일”을 “2022년 10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 중 “2020년 10월 31일”을 “2022년 10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별표3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고, 2021년 7월 1일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3의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으로 보며, 별표3의 정원 1명(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3의 식품위

생주사보 1명으로 보며, 별표5의 정원 2명(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5의 농업연구사 2명으로 보며, 별표5의 정원 2명(농업연구관 2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5의 농업연구사 2명으로 보며, 별표7의 정원 1명(농업연구관 1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7의 농업연구사 1명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농업환경부) ① (생략)	제12조(농업환경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업환경부에 토양비료과· <u>기후변화생태과</u> ·유기농업과 및 농촌환경자원과를 두되, 토양비료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u>기후변화생태과</u> 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보건의료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유기농업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농촌환경자원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 <u>기후변화평가과</u> ----- ----- ----- ----- <u>기후변화평가과</u> 장----- ----- -----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기후변화생태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u>기후변화평가과</u> 장----- -----.
1. <u>농업기상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부문 연구</u>	1. <u>농업기상 정보 분석 및 활용 체계 구축</u>
2. <u>농업생태계 건전성 유지·보전 및 유용 생태자원이용 연구</u>	<삭 제>
<신 설>	3. <u>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에 관한</u>

3. ~ 7. (생 략)

⑤ 유기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신 설>

⑥ (생 략)

제14조(농산물안전성부) ① (생 략)

② 농산물안전성부에 화학물질 안전과 · 작물보호과 · 농자재평가과 및 유해생물팀을 두되, 화학물질안전과장은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작물보호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농자재평가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유해생물팀장은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화학물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연구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

⑤ -----
-----.

1. ~ 6. (현행과 같음)

7. 농업생태계 건전성 유지 · 보 전 및 유용 생태자원이용 연 구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농산물안전성부) ① (현행 과 같음)

② ----- 잔류화학 평가과-----독성위해평 가과-----잔 류화학평가과장-----

----- 독성위해평가과장-----

-----.

③ 잔류화학평가과장-----
-----.

1. (생 략) 2. <u>농약을 제외한 유해물질의 사람·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연구</u> 3. (생 략) 4. <u>농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u> 5.·6.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④·⑤ (생 략) ⑥ <u>농자재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농약의 <u>시험기준</u>과 방법 설정 및 등록평가 기법 개발 2. 등록신청 농약의 약효·약해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6. (현행과 같음) 7. <u>농약의 잔류 시험기준과 방법 설정 및 등록평가 기법 개발</u> 8. <u>등록신청 농약의 작물 및 환경 잔류성, 이화학성 평가</u> 9. <u>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u> 10. <u>농약원제·제품의 분석법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u> 11. <u>비료의 품질·안전성 평가와 평가기준설정에 관한 사항</u> ④·⑤ (현행과 같음) ⑥ <u>독성위해평가과장</u>----- -----. 1. ----- <u>약효·약해·독성시험 기준</u>----- 2. -----
---	---

· 독성 및 잔류성 평가 3. <u>농약의 사람·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u> 4. <u>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u> 5. <u>농약원제·제품의 분석법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u> 6. <u>농약의 이화학적, 생물활성 및 위해성 평가</u> 7. <u>비료의 품질·안전성 평가와 평가기준설정에 관한 사항</u> 8. (생 략) ⑦ (생 략) 제37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라 총정원의 <u>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u>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3명(6급 3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u>평가</u> 3. <u>농약·유해물질</u>----- ----- <u>연구</u> <삭 제> <삭 제> 6. <u>농약의</u> ----- ----- <삭 제> 8.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u>7퍼센트를 넘지 않는</u>----- ----- ----- ----- -----.
--	---

②·③ (생략)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5와 같으며, 별표 5의 정원 중 2명(농업연구사 1명, 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으며, 별표 7의 정원 중 1명(농업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7퍼센트를 넘지 않는-----

-----.

② -----
-----.

----- 7-----
----- 퍼센트를 넘지 않는-----

-----.

③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3과 같다.

④·⑤ (생략)

제38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 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2 제2호, 별표 3 제2호, 별표 4 제2호, 별표 5 제2호, 별표 6 제2호, 별표 7 제2호, 별표 8 제2호 및 별표 9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

③ -----

---. -----

----- 7퍼센트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 ①-----

----- 공무원
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
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

<u>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u>	<u>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 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u>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제8조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식량산업기술팀은 <u>2020년 10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 ----- ----- <u>2022년 10월 31일</u>-----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정원 중 2명은 <u>2020년 10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 ----- ----- ----- ----- ----- <u>2022년</u> <u>10월 31일</u>-----.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39</u>	<u>338</u>	-1
1. <u>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u>	<u>339</u>	<u><삭 제></u>	-339
.	.	.	
.	.	.	
<u>별정직 계</u>	<u>2</u>	<u><삭 제></u>	-2
<u>비서(7급상당)</u>	<u>1</u>	<u><삭 제></u>	-1
<u>비서(9급상당)</u>	<u>1</u>	<u><삭 제></u>	-1
<u>일반직 계</u>	<u>336</u>	<u>337</u>	+1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시설주			
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농업연구사 또는 농			
촌지도사	18		

<u>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u>			
<u>운전주사보 · 농업연구</u>			
<u>사 · 농촌지도사</u> 또는			
<u>별정직 7급상당(비서)</u>	<u><신 설></u>	<u>1</u>	+1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시설서기			
보	8		
<u>행정서기보 · 농업서기보 또</u>			
<u>는 별정직 9급상당(비</u>			
<u>서)</u>	<u><신 설></u>	<u>1</u>	+1
·	·	·	
·	·	·	
<u>전문경력관 가군(시청각</u>			
<u>담당)</u>	<u>1</u>	<u><삭 제></u>	-1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42</u>	<u>341</u>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은 제외한다)	<u>342</u>	<삭 제>	-342
·	·	·	
·	·	·	
별정직 계	<u>2</u>	<삭 제>	-2
비서(7급상당)	<u>1</u>	<삭 제>	-1
비서(9급상당)	<u>1</u>	<삭 제>	-1
일반직 계	<u>339</u>	<u>340</u>	+1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농업연구			
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			
운전주사보 · 농업연구			
사 · 농촌지도사 또는			
별정직 7급상당(비서)	<신 설>	<u>1</u>	+1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시설서기 보	8		
<u>행정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상당(비 서)</u>	<u><신 설></u>	<u>1</u>	+1
•	•	•	
•	•	•	
<u>전문경력관 가군(시청각 담당)</u>	<u>1</u>	<u><삭 제></u>	-1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u>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원은 제외한다)</u>	<u>517</u>	<u><삭 제></u>	-517
일반직 계	<u>517</u>	<u>519</u>	+2
·	·	·	
·	·	·	
행정서기	<u>23</u>	<u>22</u>	-1
<u>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u>	<u><신 설></u>	<u>1</u>	+1
·	·	·	
·	·	·	
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			
· 수의연구사 · 보건연구사	<u>9</u>	<u>10</u>	+1
· 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농업연구사	<u>245</u>	<u>247</u>	+2
<u>수의연구사</u>	<u>1</u>	<u><삭 제></u>	-1
·	·	·	
·	·	·	
기계운영서기보	3		

<u>전문경력관 가군(시청각 담당)</u>	<u><신 설></u>	<u>1</u>	+1
<u>전문경력관 나군(시청각 담당)</u>	<u>1</u>	<u><삭 제></u>	-1
<u>2.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u>	<u>2.0</u>	<u><삭 제></u>	-2.0
<u>일반직 계</u>	<u>2.0</u>	<u><삭 제></u>	-2.0
<u>농업연구사</u>	<u>2.0</u>	<u><삭 제></u>	-2.0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u>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원은 제외한다)</u>	<u>519</u>	<u><삭 제></u>	-519
일반직 계	<u>519</u>	<u>521</u>	+2
·	·	·	
·	·	·	
행정서기	<u>21</u>	<u>20</u>	-1
<u>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u>	<u><신 설></u>	<u>1</u>	+1
·	·	·	
·	·	·	
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			
· 수의연구사 · 보건연구사	<u>9</u>	<u>10</u>	+1
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농업연구사	<u>240</u>	<u>242</u>	+2
<u>수의연구사</u>	<u>1</u>	<u><삭 제></u>	-1
·	·	·	
·	·	·	
기계운영서기보	3		

<u>전문경력관 가군(시청각 담당)</u>	<u><신 설></u>	<u>1</u>	+1
<u>전문경력관 나군(시청각 담당)</u>	<u>1</u>	<u><삭 제></u>	-1
<u>2.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u>	<u>2.0</u>	<u><삭 제></u>	-2.0
<u>일반직 계</u>	<u>2.0</u>	<u><삭 제></u>	-2.0
<u>농업연구사</u>	<u>2.0</u>	<u><삭 제></u>	-2.0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u>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원은 제외한다)</u>	<u>344</u>	<u><삭 제></u>	-344
일반직 계	<u>344</u>	<u>345</u>	+1
·	·	·	
·	·	·	
농업연구사	<u>159</u>	<u>160</u>	+1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1.0</u>	<u><삭 제></u>	-1.0
<u>일반직 계</u>	<u>1.0</u>	<u><삭 제></u>	-1.0
<u>농업연구사</u>	<u>1.0</u>	<u><삭 제></u>	-1.0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u>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원은 제외한다)</u>	<u>345</u>	<u><삭 제></u>	-345
일반직 계	<u>345</u>	<u>346</u>	+1
·	·	·	
·	·	·	
농업연구사	<u>158</u>	<u>159</u>	+1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1.0</u>	<u><삭 제></u>	-1.0
<u>일반직 계</u>	<u>1.0</u>	<u><삭 제></u>	-1.0
<u>농업연구사</u>	<u>1.0</u>	<u><삭 제></u>	-1.0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u>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은 제외한다)</u>	<u>24</u>	<u><삭 제></u>	-24
일반직 계	<u>24</u>	<u>26</u>	+2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농 업서기·농업연구사 또 는 농촌지도사	4		
<u>식품위생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	·	·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 교육 담당)	<u>5</u>	<u>6</u>	+1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2.0</u>	<u><삭 제></u>	-2.0
<u>일반직 계</u>	<u>2.0</u>	<u><삭 제></u>	-2.0
<u>식품위생서기보</u>	<u>1.0</u>	<u><삭 제></u>	-1.0
<u>전 문 경 력 관</u> <u>나군(농기계교육 담당)</u>	<u>1.0</u>	<u><삭 제></u>	-1.0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3]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u>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원은 제외한다)</u>	<u>24</u>	<u><삭 제></u>	-24
일반직 계	<u>24</u>	<u>26</u>	+2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농 업서기·농업연구사 또 는 농촌지도사	4		
<u>식품위생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	·	·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 교육 담당)	<u>5</u>	<u>6</u>	+1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2.0</u>	<u><삭 제></u>	-2.0
<u>일반직 계</u>	<u>2.0</u>	<u><삭 제></u>	-2.0
<u>식품위생서기보</u>	<u>1.0</u>	<u><삭 제></u>	-1.0
<u>전 문 경 력 관</u> <u>나군(농기계교육 담당)</u>	<u>1.0</u>	<u><삭 제></u>	-1.0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u>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원은 제외한다)</u>	<u>329</u>	<u><삭 제></u>	-329
일반직 계	<u>329</u>	<u>330</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25</u>	<u>326</u>	+1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1.0</u>	<u><삭 제></u>	-1.0
일반직 계	<u>1.0</u>	<u><삭 제></u>	-1.0
3급 또는 4급 이하	<u>1.0</u>	<u><삭 제></u>	-1.0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국립축산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25</u>	<u>326</u>	+1
<u>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원은 제외한다)</u>	<u>322</u>	<u><삭 제></u>	-322
일반직 계	<u>322</u>	<u>326</u>	+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19</u>	<u>322</u>	+3
전문경력관	<u><신 설></u>	<u>1</u>	+1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3.0</u>	<u><삭 제></u>	-3.0
일반직 계	<u>3.0</u>	<u><삭 제></u>	-3.0
3급 또는 4급 이하	<u>3.0</u>	<u><삭 제></u>	-3.0